

대부업 실태조사 서식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대부업자 공통사항(자산 100억원 이상 및 미만 법인·개인·지점)

Q) 대부업자마다 4가지 종류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업자가 해당하는 보고서만 택일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 '가나대부(주)', '가나대부중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한 대부업자입니다. 이 경우 각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하여 2개의 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이라도 동일법인인 경우 1개의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한 업자는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되, 등록내용을 '대부 및 대부중개'로 기재하면 됩니다.

Q) 1천만원 대출을 매월 2% 금리로 6개월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자 월 200,000원, 대부금리는 월 2%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A) ①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VI-1. 대출금리 현황)

대출금잔액(원)	대출금이자(원)	가중평균금리(%)
10,000,000	2,400,000 (=월이자 200,000X12개월)	24.0 (=2,400,000/10,000,000)

→ 대부업자 전체 평균금리 등 모든 금리는 연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간 대출금이자(수령여부 및 손익계산서 이자수익과 무관)를 기재하여야만 올바른 연평균 대부금리가 산출됩니다.

②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4.가.대부현황)

거래자수(명)	대부잔액(원)	연평균대부금리(%)
1	10,000,000	24.0(=월 2%X12개월)

→ 계약기간 및 실제 이자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연간으로 환산한 대부금리를 기재합니다.

※ 대부금리 외에 차입금리도 반드시 환산하여 연간 차입금리로 기재합니다.

Q) 매입채권 현황 작성시 매입가격과 액면가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A) 실태조사 보고서의 매입채권 작성 서식이 변경되어 주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①'16.6.30(상환후 잔액)과 ②최초 매입시(상환전 총액)의 매입가격과 액면가격을 각각 기재합니다.

매입채권의 매입가격 및 액면가격은 현행 직권검사대상 선정 및 향후 대부업법 개정시 등록업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16.6.30. 현재 잔액기준			② 최초 매입시 기준		
거래자수	매입가격	액면가격	매입가격	액면가격	채권매입률
147	700,000,000	14,700,000,000	1,000,000,000	15,000,000,000	6.67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Q) 본결산 전이라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 될지, 100억원 미만이 될지 불확실한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결산월에 따른 회계감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16.6말 기준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실태조사 보고서가 각종 대부업 통계 및 감독·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대부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영업(부동산, 제조업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Q) '15.12말 실태조사시에 제출한 엑셀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16.6말 실태조사 결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A) 반드시 '16.6말 기준 제19차 실태조사 목적으로 배포된 신규 엑셀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회차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일자 오류 및 추가 조사 항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Q) 당초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었는데 '16.6월에 처음으로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자산 100억원 이상 엑셀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미숙하여 이번 차수까지는 자산 100억원 미만 서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A)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은 반드시 자산 100억원 이상 엑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해당업자 모두 엑셀 보고서를 지자체 앞으로 추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작성 방법을 금감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Q) 당초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이었는데 '16.6월에 처음으로 자산 100억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6.6말 기준으로 자산이 100억원에 미달하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3.자산·부채현황” 관련, 결산 지연으로 '16.6말의 정확한 재무현황을 알 수 없어 공란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A) 신뢰성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누락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등은 등록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재무현황 누락시 등록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자기자본을 0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적정 입력사례 : ‘자산’과 ‘부채+자기자본’이 불일치,
‘자산’, ‘부채’ 항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미기재,
‘자기자본’이 (-)로 자본잠식임에도 (+)로 기재,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

4. 개인

Q) 개인 대부업자이지만 자산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개인업자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Q) 개인 대부업자의 '순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공란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A)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대부업자등은 등록시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자산을 갖추어야 하며, 항목 미기재시 순자산이 0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지점

Q) AA대부 BB지점인데, 본점이 자산 100억원 이상이면 지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점에서는 본점 및 지점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지점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Q) CC대부 DD지점인데, 관리하고 있는 채권잔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100억원 미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점은 지점용만 작성합니다.

<참고>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법률적 근거

-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1년에 2회 영업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대부업법 §12⑨)하여야 하며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 및 금융위에 제출(대부업법 §16)
 - 행자부와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대부업법 시행령§9의2)
- ※ 대부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3)

대부업법 제12조 (검사 등) ⑨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커.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